<정책과제 최종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평가방안 연구

2008.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연 구 진 >-

- 연구책임자
 - 이 효(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이 창 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 삼 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I. 과제의 개요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방향	1
3. 연구의 범위	2
Ⅱ. 예산절감의 의의	3
1. 예산절감의 개념과 목적	3
2. 예산편성상 절감의 개념과 범위	4
Ⅲ. 예산절감 평가지표의 설계	6
1. 평가지표의 초안	6
2. 평가지표의 2차 설계안	21
3. 평가지표의 최종안	25
IV. 평가지표별 매뉴얼 작성 ·······	33
1. 매뉴얼의 성격	33
2.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	33
V. 평가지표의 점수부여기준 ·······	44
1. 작성방법(행정안전부)	44
2. 평가지표별 점수부여기준(안)	47

〈표 차례〉

<표 1> 지방예산 절감·재투자 실적의 평가지표 체계 ······· 3
<표 2> 예산편성 및 절감 작성 예시(기초자치단체)6
<표 3> 예산편성상 절감의 평가지표(초안)7
<표 4> 세출절감의 평가지표(초안)11
<표 5> 수입증대의 평가지표(초안) ····································
<표 6> 절감재원 재투자의 사업유형 ····································
<표 7> 절감재원 재투자의 평가지표(초안) ····································
<표 8> 지방예산 절감·재투자 실적의 평가지표 초안 ······· 19
<표 9> 지방예산 절감·재투자 실적의 평가지표 2차 설계안 24
<표 10> 지방예산 절감·재투자 실적의 평가지표 최종안32
<표 11> 평가지표별 점수부여기준(안) ····································
<그림 차례>
/ㅋ리 1\ 서그시 스퀘키키 C

I. 과제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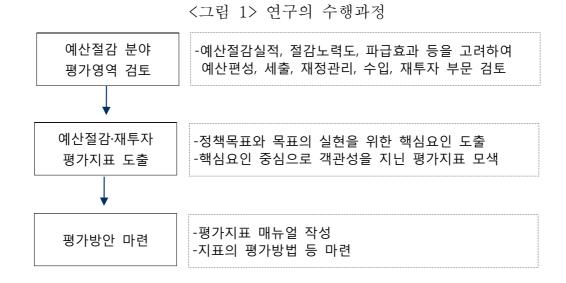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국정과제이며, 자치단 체의 적극적인 동참 유도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새 정부 출범 이후 예산 10% 절감을 국정과제로 추진, 「지방예산 절감·재투자계획」보고('08. 4. 27.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 예산절감지원단의 현장방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든 자치단 체가 예산절감 실적·사례에 대한 평가방식 및 인센티브부여 계획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특히, 예산절감에 대한 평가방식, 평가지표, 인센티브 부여방식 등은 모든 자치단체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 게 설계하는 것이 요구됨
- □ '08년 예산절감 실적에 대한 평가지표가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시스템 (VPS)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예산절감 평가방안을 확정하여야 함

2. 연구의 방향

-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절감·재투자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 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평가방안을 마련함
 - 광역자치단체는 특별·광역시와 도로 구분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자치구로 구분하여 평가
- □ "지역별 특성과 재정여건에 따른 자율적 추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절감비율 뿐 아니라 예산절감 노력도,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반영 하여 다차원적 지표 개발

- □ 예산절감·재투자실적 지표개발 및 평가방안 설계에서는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함
- □ 연구의 수행은 자치단체의 예산절감·재투자 분야를 조사, 발굴하고 이를 기초로 예산절감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설계 및 평가방안을 마련함 (<그림 1> 참조)



3. 연구의 범위

- □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재투자 실적 평가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체계(VPS)를 고려하여, 평가방안 설계
 - 자치단체 사무범위, 재정여건 등에 따라 평가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치단체 유형화 방안 마련 등
- □ 예산절감 분야의 평가지표 설계
 -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하되, 자치단 체별 예산절감 노력도 등을 감안할 수 있는 정성지표 발굴
 - 예산절감 우수사례, 예산절감 노력도, 자치단체장 관심도, 절감재원 재투자 효과, 예산절감 마인드 확산, 예산절감 시스템 제도화 등
 - 지방예산 절감·재투자 실적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는 평가시책-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세부지표의 구조를 갖도록 설계함(<표 1> 참조)

<표 1> 지방예산 절감·재투자 실적의 평가지표 체계

구분	주요 내용
평가시책	지방예산 절감·재투자 실적 평가
평가항목	지방예산절감·재투자 실적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대상 *예산편성상 절감, 세출절감, 재정관리절감, 수입증대, 절감재원 재투자의 5개 항목 선정
평가지표	평가시책의 수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양적, 질적으로 표시하는 측정지표
평가세부지표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

- □ 지방예산 절감·재투자 실적의 평가지표 매뉴얼 작성
 - 평가지표별 의의, 산정방식, 자치단체 증빙자료 제출사항 세부적인 평가지표 매뉴얼 설계
- □ 평가지표의 점수부여기준 등 평가방안 검토

Ⅱ. 예산절감의 의의

1. 예산절감의 개념과 목적

- □ 예산절감이 자원사용의 생산성을 높이고 예산낭비요인 제거 등 예산집 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예산절감의 취지와 원칙을 정하고, 예산편성·운 용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도록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즉, 낭비요인을 없애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억제하고 수입확대에 노력하면서 예산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관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 기본적으로 사업비는 중복투자나 원가심사 등을 통해 과다 사업비 계 상을 억제·방지하는 것이 요구되고, 경상적 경비는 전형적으로 인력운 영과 조직운영 관련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는 것이 요구됨
 - 사업예산제도에서는 경상적 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하는 행정운영경비로서 이에 대한 예산절감 실적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사업비는 일시적이거나 단기에 무리하게 삭감을 추진하는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효과를 저해하거나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예산절감 효과보다는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더 클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 □ 따라서 정책사업비의 절감노력은 자치단체의 거시적 관점에서 조직의 임무와 비전에 기반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사업계획과 재원배분계획을 통해 중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2. 예산편성상 절감의 개념과 범위

(1) 개념

-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업의 타당성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
 - 계속사업은 실효성이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축소·폐지, 유사· 중복 사업은 통·폐합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
 - 신규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원 가산정방식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
- 당초 예상소요에 대한 타당성·효율성 분석을 통해 같은 사업규모라면 더 적은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 등으로 예산을 절감

(2) 예산편성상 절감 범위

- ① 계속사업의 경우,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낭비요소를 점검 하여 예산을 절감
 - 관행적으로 매년 유사한 금액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자체성과평가 등을 실시하여 비효율적·낭비적인 사업은 축소·폐지
 - 동일 목적의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 '09년 예산편성 이전에 감사원 등 중앙·상급기관, 지방의회 등에서 유사·중복사업, 추진방식 등에 있어 문제가 지적된 사업의 축소·폐지
 - 제도개선,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을 통한 재정소요 절감
 - 집중투자 또는 조기투입을 통한 공기단축 등으로 실질적인 사업비를 절감한 실적
 - 지방채차입금을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하던 중 상환 미도래분 에 대해 조기에 상환하여 이자분 예산 절감
 - 고금리 지방채무잔액을 저리(低利)로 차환하는 방법을 통해 이자분 예산절감
 - 전년도와 대비하여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량이 동일하거나 증가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가 조정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
 - 편성한도액(상한액)이 정해진 경우, 당초예산에 한도액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경우에는 차액을 절감액으로 인정
 - 인력운영비의 경우, 총액인건비 한도액내에서 편성한 경우 차액을 절 감으로 인정
- ② '09년 신규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원가산정방식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
 - 통상적으로 외부용역비 등으로 편성될 사업이었으나 자체 합동설계반 (또는 감리단) 운영 등을 통해 직접 설계(감리)하기로 결정하여 예산 을 절감
 - 연구용역비 등 편성 전에 자치단체별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비를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

- 자치단체별로 '09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사업을 재검토하여 공동 건립, 통합시행 등으로 예산을 절감
- 통상적으로 편성될 사업비이나 기관간 업무협조를 통해 예산을 절감

(3) 절감실적 작성 방법

○ 경비성격(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사업비, 재무활동)별로 자연완료·감소, 계속사업, 신규·증액, 국고보조사업으로 구분하고 예산편성액과 절감액을 작성(<표 2> 참조)

<표 2> 예산편성 및 절감 작성 예시(기초자치단체)

□ 예산편성 현황							
			최 종 확 정 된 '09년 예 산 (b)	당초 편성될 '09년 예산 (a+b)	비고		
	;	계	2,310억	161억	2,273억	2,434억	
	인력운영비		310억	10억	320억	330억	
	기본경비		80억	1억	78억	79억	
세		자 연 완 료 ·감 소	100억	\nearrow	50억	50억	
세 출 절 감		계 속 사 업	450억	50억	400억	450억	
감	사 업 비	신 규·증 액	450억	100억	600억	700억	
		국 고 보 조 사 업 (시·도 비 보 조 포함)	850억		750억	750억	
	재무활동	신 규 ·증 액	70억	0	75억	75억	

Ⅲ. 예산절감 평가지표의 설계

1. 평가지표의 초안

1) 예산편성상 절감 평가지표 설정

(1) 분석대상 및 평가지표의 검토

- □ 예산편성상 절감실적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계속사업비, 신규사업비, 기타재무활동노력을 핵심항목으로 하여 평가지표를 검토함
- □ 평가지표는 정량지표의 경우 기본지표와 보조지표로 구분하고 정성지 표는 주로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설정함

〈표 3〉 예산편성상 절감의 평가지표(초안)

			정량지표		
평가지표	평가항목	기본지표 보조지표		정성지표	
	인력운영비	-총액인건비한도액 비율	-인력운영비증가율		
	기본경비	-기본경비절감율	-편성한도액비율		
예산편성 상 절감		-계속사업비절감율	-사업,시설,행사 통폐합사업 비비율 -공기단축사업비비율 -단가조정사업비비율 -사업추진상 개선에 의한 사업비 예산절감비율 -집행중 시도보조사업비 절 감비율(시도)	-제도개선 및 사업추 진방식 개선 실적 -외부기관 지적사항 반영 노력도 -자체성과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적 -유관기관간 업무협 조 노력	
	신규사업비	-신규사업비절감율	-원가산정방식적용에 의한 사업비절감비율 -공동건립, 통합시행사업비 절감비율 -자체 설계·감리, 내부심사 에 의한 사업비절감비율	-재정수요 및 수혜자 재사정 노려도	
	기타 재무 활동 노력	- 지 방 채 조 기 상 환 및 저리차환이자 비율	-민간위탁, 민자유치사업비 비율		

(2) 평가지표의 개념 및 산정방식

- (가) 인력운영비: 총액인건비한도액비율
- 자치단체별 인력운영비는 종합적으로 총액인건비로 나타나고 있음
- 자치단체별 총액인건비 한도액을 기준으로 실제 예산편성 인력운영비 를 대비함으로써 인력운영비 절감노력을 파악

○ 산식:

예산편성상 인력운영비/ 해당연도 총액인건비한도액 × 100

- 총액인건비한도액비율이 낮을수록 인력운영비 절감에 노력함
- (나) 기본경비: 기본경비 절감률
- 인력운영비와는 별도로 자치단체의 경상적 경비인 사무관리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절감노력을 파악
- 산식:

전년도 기본경비 최종집행액/ 해당년도 예산편성상 기본경비 × 100

- 기본경비 절감률이 높을수록 경상비 절감에 노력함
- (다) 계속사업비: 계속사업비 절감률
- 자치단체의 예산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사 업비이고 사업비는 계속사업비와 신규사업비로 구분
- 계속사업비는 자치단체별로 노력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으므로 이의 예산절감 노력을 판단
- 산식:

예산편성상 계속사업비 절감액 총액/ 계획된 해당 계속사업비 총액 *계속사업비 절감액 총액: 사업,시설,행사 통폐합사업비절감액, 공기단축사업 비 절감액, 단가조정사업비 절감액, 사업추진상 개선에 의한 사업비 절감액, 집행중 시도보조사업비 절감액(시도)의 합계액으로 산정

- 계속사업비 절감률이 높을수록 예산절감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함
- (라) 신규사업비 : 신규사업비 절감률
- 신규사업비의 경우도 계속사업비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별로 노력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이의 예산절감 노 력을 판단
- 산식:

예산편성상 신규사업비 절감액 총액/계획된 해당 신규사업비 총액
*신규사업비 절감액 총액: 원가산정방식 적용에 의한 사업비절감액, 공동건 립 및 통합시행사업비 절감액, 자체 설계·감리 및 내부심사에 의한 사업비 절감액의 합계액으로 산정

- 신규사업비 절감률이 높을수록 예산절감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함
- (마) 기타 재무활동 노력: 지방채조기상환 및 저리차환이자비율
- 기타 재무활동 노력의 결과로 인한 해당년도 예산편성상 예산절감을 파악함
- 산식:

예산편성상 지방채조기상환 및 저리차환이자절감액/계획된 해당 지방채 이 자부담액 × 100

- 지방채조기상환 및 저리차환이자비율이 높을수록 예산절감에 노력함
- 2) 세출절감 평가지표 설정
- (1) 분석대상 및 평가지표의 검토
- (가) 분석대상의 분류
-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재정관리, 시설관리, 계약·조달 항목으로 구분
- 전체 사업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이 아닌 경우는 모두 정책사업비 로 분류
- (나) 정책사업비
- 기존지표에 대한 의견 : 사업비 절감(자체 또는 보조)
- 예산절감은 단순히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효율 적으로 활용했는지에 초점이 있음
- 이와 연계하여 일하는 방식 등 예산절감 기법의 적용을 통해 당초 사업비에 비해 어느 정도 절감되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대안지표 : 사업비 절감률
- 선결과제 : 본 지표의 적용시 실제 어느 정도 사업비가 절감되었는지 에 대한 정확한 분석방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절감효과를 올해 발생한 효과만을 대상으로 할지, 제도의 존속기 간을 모두 산정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해 판단 필요

(다) 행정운영경비

- 기존지표에 대한 의견: 인력운영비 절감률, 기본경비 절감률
-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절감률은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경비를 절감한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지표임
- 쟁점 :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음
- 행정운영경비 전체를 대상으로 할지 또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일 부분 만을 대상으로 할지
- 경상적 경비는 연도 간에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해 절감할 경우 다음연도에 증대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단년도를 대상으로 할지 아 니면 복수년도를 대상으로 할지에 대해 결정 필요
- 검토의견
 - 1안은 행정운영경비 전체를 대상으로 3~5년의 경비절감액을 분석
 - 2안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분리하여 3~5년의 경비절감액을 분석

(라) 재정관리

- 기존지표에 대한 의견: 순세계잉여금비율, 추경예산편성비율, 연말지출 원인행위비율
 - 재정관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과정과 다양한 사업 및 과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의 주안점을 두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분석의 주안점 : 낭비요인의 억제
- 대안지표 : 연말지출원인행위비율

(마) 시설관리

- 기존 지표에 대한 의견 :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비율은 민간이전 사업 전체에 대한 것으로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민간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음
 - 또한 민간이전이 모두 비용적 성격의 지출인가에 대하여 이론이 있을 수 있음
- 분석의 주안점 : 불요불급한 시설로 인한 재정압박의 최소화
- 대안지표 : 자본시설유지비율

(바) 계약·조달

- 지표의 검토 : 수의계약비율, 자체조달 대 외부조달 비율, 특정분야 공 사계약 편성액 대비 계약집행실적
 - 수의계약비율 지표는 계약방식의 개선을 통해 예산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음
 - 자체조달 대 외부조달 비율 지표는 조달방식과 계약부서 인력의 최적 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 외부조달이 많은 경우 자체인력 활용이 그만큼 적게 되므로 그에 상응하게 조직 인력을 운영할 것이 요구됨
 - 특정분야 공사계약 편성액 대비 계약금액 실적은 예컨대, 토목공사 계약편성액 중에서 실제 계약시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하였는가를 보기위한 지표임

○ 검토의견

- 자체조달 대 외부조달 비율을 기본지표로 설정
- 수의계약비율, 특정분야 공사계약 편성액 대비 계약금액 실적은 보조 지표로 활용

〈표 4〉 세출절감의 평가지표(초안)

ᆑᄭᄞ	정량지표		정성지표	
평가지표	기본지표	보조지표	기본지표	보조지표
정책 사업비	사업비 절감율	자체사업비 절감율 보조사업비 절감율	사업분야에서 일하는 방식 등 예산절감을 위해 새로 도입된 또는 적용된 기법의 건수	예산절감

	행정운영경비 절감률	경상적 경비비율	행정운영 분야에서 일하는
행정운영 경비	인력운영비 절감률 기본경비 절감률	인건비 비율 기본경비 절감율 업무추진비 절감율	방식 등 예산절감을 위해 새로 도입된 또는 적용된 기법의 건수
재정관리	연말지출원인행위 비율	지방세수예측도 이월금 비율 이자수입비율 채권관리의 적정성 결손비비율	
시설관리	자본시설유지비율	자본시설건축비 비율 유형고정자산상각율	
계약	자체조달 대 외부조달의 비중	-수의계약비중 -특정분야 공사계약 편성액 대비 계약 금액실적	연조소단계약인트이 개시(시사인전

(2) 지표 정의 및 정책목표

- □ 지표명 : 사업비 절감률
- 정의 : 일하는 방식 등의 개선을 통해 당초예산(또는 당초사업비) 대비 집행액(또는 사업비 절감액)
- 일하는 방식 등의 개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신기술 도입, 집행부진 사업 조정, 수혜대상자 재산정, 유휴시설 재활용 등
- 정책목표 :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해 예산절감을 유도
- □ 지표명 : 행정운영경비 절감률
- 정의 : 전체 행정운영경비 대비 3~5년 동안의 행정운영경비 절감액
- 정책목표 : 지속적으로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가 솔선수범하여 경비축소에 노력하고 있음을 표출→ 중앙정부 및 사 회 전체로의 확산 유도
- ※ 행정운영경비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하여 각각 인력운영비 절감률, 기본경비 절감률 지표를 고려할 수 있음
- □ 지표명 : 연말지출원인행위비율

- 정의 : 전체 사업비중 11월 및 12월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사업비의 비율
- 정책목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을 억제
- □ 지표명 : 자본시설 유지비율
- 정의 : 전체 사업비중 자본시설에 소요된 지출액의 비율
- 자본시설 : 청사, 독서실, 문예회관, 체육시설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타당성 조사 대상 시설
- 정책목표 : 불요불급한 자본시설 신축을 억제
- □ 지표명 : 기능(분야/ 부문)별 투자사업 부대비용 절감실적
- 정의 : 총사업비에는 투자비와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기능 (분야/ 부문)별 투자사업 부대비용 편성액과 실제집행액을 비교하여 예 산 절감실적을 평가함
- 정책목표 : 사업부대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유도
- □ 지표명 : 자체조달 대 외부조달 비율
- 정의 : 자체조달과 외부조달의 비율을 측정하여 조달방식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계약부서의 조직과 인력의 최적화를 유도하기 위함
- 정책목표 : 조달방식의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유도
- 3) 수입증대 평가지표 설정
- (1) 분석대상 및 평가지표의 검토
- (가) 분석대상의 분류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기금 등 3개 항목으로 분류
- (나) 지방세
- 기존지표에 대한 의견: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징수율증감률

- 지방세징수율은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기 보다는 환경적 변화의 요인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지방세징수율증감율은 자치단체의 노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임
 - · 다만, 이 지표는 현재 과세대상으로 확정된 세원에 대한 지표라는 점에서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보완지표가 필요함
- 대안 : 지방세징수율증감률(기본지표), 은닉탈루세원발굴비율(보조지표)

(다) 세외수입

- 기존지표에 대한 의견 : 세외수입증대비율, 세외수입징수율증감률
- 세외수입 분야에서 전년 대비 세입수입증대액 및 세외수입징수율증감 률은 연도간의 환경변화 요인이 작용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세외수입증대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관련 제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출된 값은 자연적인 변화의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세외수입징수율증감률은 자치단체의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으나 이 역 시 자체노력 보다는 관련 환경변화 요인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대안: 요금현실화율, 일반회계의존율
- 대안지표 검토 : 수입증대의 취지에 적합하며, 노력도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이나 사용료에 한정되는 제약이 있음
- 검토(안) : 요금현실화율(기본지표), 일반회계의존율 및 세외수입징수율 증감률(보조지표)

(라) 지방기금

- 기존지표에 대한 의견 : 이자수입비율, 투자수익율
 - 이자수입비율
 - · 통합기금관리를 유도하기 위함이나 개별기금과 통합기금 간의 이자수 입의 차이가 크지 않음

- · 국내 지방기금의 이자수입 자체가 분별력이 크지 않음
- 투자수익율 : 국내기금은 현실적으로 투자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금 이 별로 없음
- 대안: 개선권고사항이행률, 일반회계의존율
 - 개선권고사항이행률 : 지방기금의 성과분석 시 개선권고를 하고 있으나 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상황임
 - · 지방기금의 개선권고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지표로서 의의가 있음
 - · 다만, 모든 기금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기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 일반회계의존율
 - · 일반회계와 비교할 때 나타나는 기금의 특성중 하나는 연계성임
 - · 연계성은 수입과 지출의 연계, 부담과 편익의 연계로 나타나게 되는 바, 수입증대 분야에서는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중심임
 - · 따라서 기금 수입 중 어느 정도를 일반회계에 의존하는지 그 정도를 분석하는 것은 지표로서 의미가 있음
- 검토(안): 개선권고사항이행률, 일반회계의존율(기본지표)
- 사전고려사항 : 개선권고사항이행률을 기본지표로 활용할 경우 개선권 고를 받지 않은 기금은 모두 만점 처리하는 것이 필요

〈표 5〉 수입증대의 평가지표(초안)

평기지교	정링	정량지표		정성지표	
명가지표 	기본지표	보조지표	기본지표	보조지표	
지방세	지방세징수율증감율	은익탈루세원발굴비율 지방세증감율	ᄼᅁᅎᄜ	ㅇᄉ 니게	
세외수입	요금 현실화율	세외수입증감율 세외수입징수율증감율	수입증대	구구시데	
지방기금	개선권고사항이행율 일반회계의존율	통합기금예치율 고유목적 사업비비율	설치목적의 적정성	수혜자선정 의 투명성	

(2) 지표 정의 및 정책목표 □ 지표명 : 지방세징수율증감률 ○ 정의 : 전년 대비 지방세징수율의 증가 정도(과년도분 포함) ○ 정책목표 : 지방세징수 노력 강화를 유도 □ 지표명 : 은닉탈루세원발굴비율 ○ 정의 : 전체 세입 대비 은익탈루세원의 발굴 정도 ○ 정책목표 :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수입의 증대를 유도 □ 지표명 : 요금현실화율 ○ 정의 : 전년 대비 사용료 요금의 현실화율 ○ 정책목표 : 사용료 요금의 현실화 및 일반회계의 재정지출 축소를 유 도할 수 있음 □ 지표명 : 일반회계의존율 ○ 정의 : 사용료 등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출금 의 비율을 분석 ○ 정책목표 : 일반회계의 지출 감소 및 기금의 독립채산을 유도 □ 지표명 : 세외수입징수율증감률 ○ 정의 : 전년 대비 세외수입징수율의 증감 정도 ○ 정책목표 : 세외수입증대 노력 강화 유도 □ 지표명: 개선권고사항이행율 ○ 정의 : 지방기금성과분석에서 권고한 내용의 이행 정도 ○ 정책목표 : 지방기금성과분석의 환류를 제고하고 통폐합 등 기금운영

의 효율화를 유도

- □ 지표명 : 통합관리기금예치율
- 정의 : 전체 기금적립액 중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고 있는 정도
- 정책목표 : 규모경제를 통해 기금의 효율성 및 이자수입의 증대 유도
- 4) 절감재원 재투자 평가지표 설정
- (1) 분석대상 및 평가지표의 검토
- □ 분석대상의 분류 :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저탄소·녹색 성장, 물가안정 등 5개 항목으로 구분
- □ 재투자 인정범위
- 추경편성을 통해 지방의회에서 확정한 재투자실적
- 추경편성을 통한 절감재원 활용실적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재투자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서 확정한 실적임
- 사업간 조정(예산의 전용·변경)을 통해 내부적으로 확정한 재투자실적
 - 예산의 전용·변경을 통한 절감재원 활용실적은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사업간 조정을 통해 절감재원을 재투자분야에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 예산구조 상에서 단위사업간 조정(예산 전용) 또는 세부사업간 조정 (예산의 변경)을 통해 절감재원을 재투자하는 것을 말함
- ※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나머지 재원을 절감재원 재투자사업에 편성하는 것은 불인정

<표 6> 절감재원 재투자의 사업유형

평가항목	주요 사업 유형		
경제살리기	기업경쟁력 강화, 투자환경 조성, R&D 투자, 신성장동력 산업 BT·지식서비스 등 미래유망 기술개발 신기술·고부가가치 산업 지원·육성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혁 및 판로확충 지원 도로·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		
서민생활안정	저소득층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영세·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사회안전 관련투자(예: 부정불량식품 단속 등 식 생활안전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범용 CCTV 구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권 보호 강화, 학교급식지원 등
일자리창출	청년실업자 취업난 해소, 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여성·노인·장애인·비정규직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강화 공공기관·중소기업 인턴제 및 해외인턴 지원, 맞춤형 직업훈련 등
저탄소·녹색성장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신재생 에너지 개발, 환경친화적 제품사용 등
물가안정	지역물가안정, 버스·택시·화물차업계 지원 등

□ 평가지표의 검토

- 지표명 : 절감재원 대비 재투자액 비율
- 전체 예산절감재원 중에서 어느 정도 재투자에 투입하였는가 하는 절 감재원 재투자 실적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임
- 지표명 : 전체 재투자액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재투자액의 비율
- 경제살리기 항목의 재투자실적
- 서민생활안정 항목의 재투자실적
- 일자리창출 항목의 재투자실적
- 저탄소·녹색성장 항목의 재투자실적
- 물가안정 항목의 재투자실적

〈표 7〉 절감재원 재투자의 평가지표(초안)

평가지표	평가항목	정량지표	정성지표
	전체	절감재원 대비 재투자 실적	-
	경제살리기	전체 재투자액 대비 경제살리기 부문의 재투자비율	
	서민생활안정	전체 재투자액 대비 서민생활안정 부문의 재투자비율	
절감재원 재투자	일자리창출	전체 재투자액 대비 일자리창출 부문의 재투자비율	절감재원 재투자 우수사례
	저탄소·녹색성장	전체 재투자액 대비 저탄소·녹색성장 부문의 재투자비율	
	물가안정	전체 재투자액 대비 물가안정 부문의 재투자비율	

(2) 지표 정의 및 정책목표

□ 지표명 : 절감재원 대비 재투자실적

- 정의 : 전체 절감재원 중에서 재투자에 투입한 금액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임
- 정책목표 : 절감재원의 재투자 실적을 높이고 예산절감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함
- □ 지표명 : 전체 재투자액에 대한 각 항목별 재투자액의 비중
- 정의 : 전체 재투자액 중에서 각 평가항목(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저탄소·녹색성장, 물가안정)에 투입한 실적을 분석하는 지 표임
- 정책목표 : 절감재원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재투자하도록 유 도하고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

5) 평가지표의 설계 초안

- □ 앞에서 살펴본 지방예산 절감·재투자 실적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의 설계 초안을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8>과 같음
- 정성지표의 경우 1개 기본지표를 제시하고 나머지는 보조지표로 활용

〈표 8〉 지방예산 절감·재투자 실적의 평가지표 초안

평가지표	평가항목	정량지표(기본지표)	정성지표
예산 편성상 절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계속사업비 신규사업비	총액인건비한도액 비율 기본경비절감률 계속사업비절감률 신규사업비절감률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방식 개선 실적 -외부기관 지적사항 반영노력 -자체성과평가시스템 축 및 운영 실적
26	기타 재무활동 노력	지방채조기상환 및 저리차환이자비율	-유관기관간 업무협조 노력 -재정수요및 수혜자재산정 노력 -신기술, 신공법 도입 노력
세출절감	정책사업비	사업비 절감률	사업비 예산절감 신기법의 건수,

			예산절감 우수사례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절감률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 신기법의	
	기본경비	기본경비 절감률	건수 예산절감 우수사례	
	재무활동	재무활동 절감률		
	재정관리	연말지출원인행위비율	예산절감 우수사례	
	시설관리	자본시설유지비율		
	계약(조달)	외부조달비율		
	지방세	지방세징수율증감률		
수입증대	세외수입	요금 현실화율	수입증대 우수사례	
T 8 0 41	지방기금	개선권고사항이행률	제도개선 실적	
		일반회계의존율		
	전체	절감재원 대비 재투자		
	다세	실적		
	경제살리기	전체 재투자액 대비		
		경제살리기 항목의		
		재투자비율		
	서민생활안정	전체 재투자액 대비		
		서민생활안정 항목의		
절감재원		재투자비율		
골임세원 재투자	일자리창출	전체 재투자액 대비	절감재원 재투자 우수사례	
		일자리창출 항목의		
		재투자비율		
	저탄소·녹색성장	전체 재투자액 대비		
		저탄소·녹색성장 항목의		
		재투자비율		
	물가안정	전체 재투자액 대비		
		물가안정 항목의		
		재투자비율		

2. 평가지표의 2차 설계안

- 1) 평가지표의 초안에 대한 검토
- □ 예산절감·재투자의 평가지표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만을 대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지방예산 절감·재투자 실적 평가 시에는 기금, 공사·공단, 출연·출자기 관 실적은 대상이 아님
 - ※ 예산절감 평가와는 별도로 내년도 상반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별로 예산절감 실적을 취합 시에는 기금, 공사·공단, 출연·출자기관의 실적도 포함시킬 예정임
- □ 지방예산 절감·재투자 실적 평가에 포함되는 모든 지표(정량, 정성)는 통합평가시스템(VPS)에 입력을 하게 되므로, 모든 평가자료 생성이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자동으로 생성되어야 함
 - 따라서, 평가지표 개발 시에는 향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입력할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방안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일례로, 기본경비 절감률의 경우, 사업예산제도의 기본경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자치단체마다 기본경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르고, 앞으로 평가지표로 계속 포함될 경우에는 관서운영비를 기본경비에는 포함하지 않고 정책사업비로만 편법 편성하는 사례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기본경비 절감률의 대상경비를 예산과목(통계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 지방예산 절감·재투자 실적 평가지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예산절 감 기본계획('08.4.4) 및 예산편성상 절감계획('08.10.2)에서 지방자치 단체에 권장한 예산절감 방법(범위)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 는 지표들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시·도에 계약심사부서 설치를 권장한 바(시기별로 계약심 사부서 설치일자는 다름), 계약심사부서 요구액 대비 계약심사부서

절감금액 비율 등이 지표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

- □ 예산절감 평가지표 구성안 4개 부문 중 예산편성상 절감은 '09년도 예산편성상 절감실적을 대상으로 하고, 세출절감·수입증대·절감재원 재투자실적은 '08년도 예산집행상 절감실적을 대상으로 함
 - 예산편성상 절감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과 예산집행상 절감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도 타 사례들을 참고하여 어떻게 가중치를 둘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08년 예산집행상 절감실적에 대한 평가는 본 통합평가 시기가 '09.3 월중이므로 가결산 자료가 나오는 시점임
- □ 정성지표(5% 이내) 평가항목으로는 예산편성상 절감, 세출절감, 수입증대, 절감재원 재투자 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보다 예산절감 관련 우수사례와 제도개선 실적을 정성지표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
- □ 절감재원 재투자 실적은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등으로 구분하지 말고. 재투자실적을 하나의 지표로 통합 필요
 - 절감재원 재투자 실적은 '08년 예산집행상 재투자 실적만 평가시 해 당됨('09년 예산편성상 절감재원 재투자 실적은 평가지표에서 제외)
 - 절감재원 재투자 실적 중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등 분야별로 비 중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 세출절감 평가지표 중 사업비 절감률은 금년도에 발생한 효과만을 절 감실적으로 포함
 - 행정운영경비, 경상적 경비는 단년도 만을 대상으로 함
- □ 연말지출원인행위 비율은 자치단체의 자체사업 만을 대상으로 함
- 보조사업은 연말지출원인행위 비율에서는 제외(시·도의 경우 국고보조 사업, 시·군·구의 경우 국고 및 시·도비 보조사업)

- □ 평가지표에 포함하기 어려운 지표는 제외
 - 자본시설 유지비용 : 유지비용 대상 범위를 규정하기가 어렵고 통계 자료 취합도 어려움
 - 외부조달 비율(자체조달 대 외부조달 비중) : 관련부서(회계·공기업과) 에서 다소 부정적으로 판단
 - 요금 현실화율 :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정부방침이므로 예 산절감 차원에서 지표로 포함하기에는 부적절함
 - 지방기금 개선권고사항 이행률, 일반회계 의존율 : 예산절감과 다소 거리가 먼 지표임

□ 기타 검토사항

- 평가시책별 점수 비중은 '세출절감' 부문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필요
-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한 평가 세부지표 추가 검토 필요
- 수입증대 평가지표 중 세외수입 이자율은 담당부서와 협의결과, 전체 적으로 포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음
- 2) 평가지표의 2차 설계안
- □ 지방예산 절감·재투자 실적 평가지표의 설계 초안에 대한 전문가 및 실 무자들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평가지표의 2차 설계안을 다음과 같이 구성함(<표 9> 참조)
 - 평가항목(4개)- 평가지표(14개)- 평가세부지표(16개)
 - '09년 예산편성상 절감
 - 예산편성상 절감 : 평가지표(5개)- 평가세부지표(6개)
 - '08년 예산집행상 절감·재투자 : 평가지표(9개)- 평가세부지표(10개)
 - 세출절감 : 평가지표(5개)- 평가세부지표(6개)
 - 수입증대 : 평가지표(3개)- 평가세부지표(3개)
 - 절감재원 재투자: 평가지표(1개)- 평가세부지표(1개)

<표 9> 지방예산 절감·재투자 실적의 평가지표 2차 설계안

구분	평가항목(4)	평가지표(14)	평가 세부지표(16)	비고
'09년 예산 편성상 절감	① 예산편성상 절감	①-1 인력운영비 절감률	①-1-1 인력운영비 절감률	정량
		①-2 기본경비 절감률	①-2-1 기본경비 절감률	정량
		①-3 정책사업 절감률	①-3-1 계속사업 절감률	정량
			①-3-2 신규사업 절감률	정량
		①-4 재무활동 절감률	①-4-1 재무활동 절감률	정량
		①-5 예산편성상 절감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실적	①-5-1 예산편성상 절감 우수사례 및 재도개선 실적	정성
'08년 예산산 집행상 절및 재투자	② 세출절감	②-1 인력운영비 절감률	②-1-1 인력운영비 절감률	정량
		②-2 기본경비 절감률	②-2-1 기본경비 절감률	정량
		②-3 정책사업 절감률	②-3-1 정책사업 절감률	정량
			②-3-2 계약심사 절감률	정량
		②-4 연말 지출원인 행위 비율	②-4-1 자체사업 연말지출 원인행위 비율	정량
		②-5 예산집행상 절감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실적	②-5-1 예산집행상 절감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실적	정성
	③ 수입증대	③-1 지방세 증대	③-1-1 지방세징수율증감률	정량
		③-2 세외수입 증대	③-2-1 세외수입징수율 증감률	정량
		③-3 수입증대 우수 사례 및 제도개선 실적	③-3-1 수입증대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실적	정성
	④ 절감재원 재투자	④-1 예산집행상 절감 재원 재투자율	③-1-1 예산집행상 절감재원 재투자율	정량

3. 평가지표의 최종안

- 1) 평가지표의 2차 설계안에 대한 검토
- □ 평가지표의 체계에 대한 검토
 - 세출절감 재정관리 절감실적에 '재무활동 절감률' (정량지표) 추가
 - 예산편성상 절감실적에는 재무활동 절감률이 들어가는데, 집행상 절감실적에 들어가지 않으면 재무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자치 단체에 대해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 총액인건비한도액 예산반영 절감률

- 광역자치단체는 사례가 없겠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부산 북구와 같이 재정력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총액인건 비 한도액 중 절반만 반영하고 추경을 통해 예산을 반영할 경우의 절감실적 평가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필요
 -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지 않지만, 시군구의 평가지 표 체계에 대하여는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함

□ 기본경비예산 절감률

- 기본경비의 대상 통계목을 몇 개로 정해줄 것인가(측정방법에 제시된 대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만), 아니면 사업예산 세출구조 체계에서 정한 대로 기본경비 전체 금액을 평가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 필요
 -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여비를 통계목으로 지정하여 기본경비로 설정하는 방법과, 또는 세출구조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까지 포함한 기본경비(정책사업, 재무활동 제외)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 필요
 - 사업예산제도의 취지는 기본경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당초 취지 대로 기본경비에 들어갈 대상과목을 정책사업에 많이 포함하여 편

성한 자치단체는 절감하고 싶어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기본경비 예산절감률이 낮게 나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의 견이 제기될 수 있음

- 기본경비 예산절감률은 지표값이 마이너스(-) 점수 이하로 나올 가 능성이 많이 있으므로 평가세부지표의 점수부여기준(평가지표 작성 지침) 설정 시 편차가 없도록 검토 필요
 - 이와 관련하여 시·도본청별 일반운영비(201), 여비(202) 편성목을 대상으로 '07년도 결산액과 '08년도 당초예산액을 기준으로 지표 값이 나오는 수치를 분석한 자료를 참조

□ 정책사업비 예산절감률

- '09년도 계획된 해당 계속사업비의 총액
 - '09년도 예산편성시 절감 반영된 해당 계속사업의 합계액일 경우 자치단체에서 절감이 가능한 금액규모가 큰 사업만 선택하여 전략 적으로 절감실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 중한 검토 필요
 -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연도별 최종예산 전망치를 작성토록 되어 있어서 동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절감실적을 고려하여 '09년도 예산안과 맞추어 중기재정계획을 편 성할 우려(절감비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있으므로 검토 필요
 - 계속사업비, 신규사업비의 분모를 평가지표에서 제시된 대안과 지 방의회에서 확정한 '09년도 계속사업비, 신규사업비 총액으로 하는 대안을 2가지로 제시하여 검토 필요
- 한도액이 있는 경비에 대하여는 현재 안대로 하면 계속사업이든 신 규사업이든 간에 어디든 포함될 수 있지만, 이 경우 각 경비에 대하 여 평가세부지표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 가 있음
 - 예) 한도액 경비 예시
 - 총액인건비(포함여부 검토 필요)
 - 의회경비 :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방

의회의원 국외여비

- 집행부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 집행부 사업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계속사업비, 신규사업비 절감률의 자료제출 서식에 평가지표에서 제 시한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상이 안되는지, 아니면 기타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재무활동 예산반영절감률

- 분자항목인 재무활동 절감액은 지방채 조기상환 뿐만 아니라 재무활 동 대상과목에 의거 편성된 절감실적이 모두 해당되어야 할 것임
- 분모항목인 계획된 '09년도 재무활동경비 총액도 지방채 조기상환 뿐만 아니라 재무활동 대상과목에 의거 편성된 예산액 총액이 해당 되며
 - 또한 총액도 정책사업비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상으로 할 것인지 또 는 의회 확정액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 필요

□ 예산편성상 절감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실적

- 측정방법에는 우수사례, 제도개선 실적 이외에도 교육 및 홍보실적, 기관장 관심도 항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이 점은 예산편성상 절감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상 절감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실적에도 해당됨

○ 자료제출 서식

- 정량평가에 의해 반영된 사례도 우수사례라면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서식은 사례명, 사례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예산집행상 절감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실적 자료제출 서식도 동일)

□ 인력운영비 절감률

- 인력운영비 절감률의 지표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으므로 평가세부지표의 점수부여기준(평가지표 작성지침) 설정시 편차가 없도록 작성 필요
 - 이와 관련하여 시·도본청별 인력운영비(19개 통계목)를 대상으로 '07년도 결산액과 '08년도 당초예산액을 기준으로 지표값이 나오 는 수치를 분석한 자료를 참조

□ 기본경비 절감률

- 기본경비의 대상 통계목을 몇 개로 정해줄 것인가? 즉, 측정방법에 제시된 대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예산 세출구조 체계에서 정한 대로 기본경비 전체 금액을 평가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 필요
 -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여비를 통계목으로 지정하여 기본경비로 설정하는 방법과, 또는 세출구조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까지 포함한 기본경비(정책사업, 재무활동 제외)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 필요
 - 사업예산제도의 취지는 기본경비를 최소화하는데 두고 있어, 기본 경비에 들어갈 대상과목을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한 자치단체는 절감하고 싶어도 절감할 수 있는 경비가 없어 절감률이 낮게 나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 금년도의 경우, 예산절감이 추진된 관계로 당초예산액이 최종예산액 보다 금액이 많아서 지표값이 마이너스(-) 점수 이하로 나올 가능성 은 많지 않으나, 자치단체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평가세 부지표의 점수부여기준(평가지표 작성지침) 설정시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시·도본청별 일반운영비(201), 여비(202) 편성목을 대상으로 '07년도 결산액과 '08년도 당초예산액을 기준으로 지표 값이 나오는 수치를 분석한 자료를 참조

□ 정책사업비 절감률

- 정책사업비 절감률은 당초예산액 대비 절감액(당초예산액-최종집행액)을 보는 지표값으로 사업예산제도가 '08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으므로 평가세부지표의 점수부여기준(평가지표 작성지침) 작성시 심도 있는 검토 필요
 - 이와 관련하여 시·도본청별 '06년도 사업예산(200), 채무상환(300), 예비비(400) 결산액과 '07년도 당초예산편성액과의 지표값을 검토
- 계약심사 절감률의 경우 시·도에 계약부서를 설치한 시기가 최근 6 개월 이내에 설치한 부서도 있고, 종전부터 설치한 시도(서울, 울산) 도 있고,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시도(인천)가 있는데 이런 경우 형 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필요
 - 또한 절감실적을 높이고자 계약심사부서 요구액을 부풀리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 필요
- 회계공기업과에서는 계약방법의 적정성평가(계약금액, 계약특성에 따른 계약방법(경쟁의 방법, 제한경쟁, 수의계약 등의 적정성평가), 특허 및 신기술활용 등으로 당초금액보다 예산을 얼마나 절감했는가에 대해 별도의 평가항목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아울러, 계약심사 절감률의 증빙자료는 기본서식을 제시해 주는 것 이 필요

□ 재정관리 절감실적

- 연말지출원인행위 비율
 - 금액 기준으로 지표값을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금액과 지출원인행 위 건수를 모두 볼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한 가지만 선택할 경우, 금액 기준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성 경비비율로 지표명을 변경
 - 행사·축제성 경비비율의 평가세부지표의 점수부여기준(평가지표 작성지침) 작성 시에는 '07년도 재정분석 자료 참조

- □ 예산집행상 절감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실적
 - 제도개선 실적의 경우 건수만 볼 것이 아니라, 증빙자료에는 구체적 인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 민자유치 사례도 자치단체 예산절감 실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 지방에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정성평가의 세부항목 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필요

□ 지방세징수율 증감률

○ 평가세부지표의 점수부여기준(평가지표 작성지침) 작성 시에는 '07 년도 재정분석 자료 참조

□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증감률

- 교부세과(세외수입) 의견을 참조
 - 징수율은 자치단체가 부과한 금액에 대한 징수노력을 측정하는 지 표로서 예산절감의 수입증대와는 다소 맞지 않음
 - 또한 경상적세외수입 징수율이 자치단체 평균적으로 97%이상이며, 징수율 증감율은 자치단체별 변별력이 없어 평가지표로서 "합리적 이지 않다"라고 지난 정부합동평가 지표 워크샵에서 제기되었음
 - 수입증대 노력면에서는 자치단체별 세외수입 증감률 또는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징수율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① 세외수입 증감률

- 산식 : 전년도 경상적세외수입(일반회계)/당해연도 경상적세외수입(일반회계) × 100
- * 징수율은 부과액 대비 징수액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세외수입 증 감률은 전년대비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측정하는 사항임

②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징수율 (체납액축소)

- 산식 : 수납액 / 징수결정액 × 100

- * 일반회계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일반+기타회계를 대상으로 할 것 인지를 검토 필요
- * 수입증대 우수사례 등 정성평가 지표항목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 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지난년도 수입(10% 이하)에 대한 징수율 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자치단체의 수입증대를 유도
- □ 수입증대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실적
 - 증빙자료에는 우수사례의 구체적인 내역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서식도 추가 제시 필요
- □ 예산집행상 절감재원 재투자율
 - 절감재원을 재투자할 경우, 재투자의 범위에 지역현안사업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검토 필요
- 2) 평가지표의 최종안 도출
- □ 예산절감 평가지표의 2차안에 대해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검토를 거친 후, 평가지표의 최종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표 10> 참조)
 - 평가시책명은 지방예산 절감·재투자 실적으로 하여 5개 평가지표, 12개 세부지표(정량지표 9개, 정성지표 3개)로 최종안을 도출
 - '09년 예산편성상 절감 부문에서는 평가지표로 예산편성상 절감 지 표를 설정함
 - '08년 예산집행상 절감 및 재투자 부문에서는 세출절감, 재정관리절 감, 수입증대, 절감재원 재투자 등 4개 평가지표를 설정함

<표 10> 지방예산 절감·재투자 실적의 평가지표 최종안

평가지표(5)	평가 세부지표(12)	정성·정량 구분	비고	
	①-1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률	정량		
① 예산편성상	①-2 정책사업 예산절감률	정량	'09년 예산편성상	
절감	①-3 재무활동 예산절감률	정량	에선원(경경 절감	
	①-4 예산편성상 절감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실적	정성		
	②-1 행정운영경비 절감률	정량	'08년	
② 세출절감	②-2 정책사업 절감률	정량		
1221	②-3 재무활동 절감률	정량		
	②-4 예산집행상 절감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실적	정성		
③ 재정관리	③-1 자체사업 연말지출원인행위 비율	정량	예산집행상 절감 및 재투자	
절감	③-2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정량	/11 1 / 1 	
④ 수입증대	④-1 수입증대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실적	정성		
⑤ 절감재원 재투자	⑤-1 예산집행상 절감재원 재투자율	정량		

주 : 평가세부지표의 산정공식은 IV. 평가지표별 매뉴얼을 참조

Ⅳ. 평가지표별 매뉴얼 작성

1. 매뉴얼의 성격

- □ 평가지표별 매뉴얼은 통합평가시스템에서 지방예산 절감·재투자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지침으로서 평가지표, 평가내용, 측정방법 등 지방 예산 절감·재투자 실적평가에 관한 다음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측정방법
 - 산식
 - 산식설명
 - 평가대상
 - 평가기준일
 - 자료제출서식
 - 증빙자료
 - 통계자료
 - 문의처

2.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

□ 지방예산 절감·재투자 실적평가에 대해 예산편성상 절감, 세출절감, 재 정관리 절감, 수입증대, 절감재원 재투자의 5개 평가지표별로 매뉴얼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예산편성상 절감

평 기 객	9-6 지방예산 절감ㆍ재투자 실적 평가		
평 기 표	9-6-1 예산편성상 절감	가중치	
측 방	○ 산식 ②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률 : 총액인건비한도액 예산반 기본경비 예산절감률(50%) ③-1 총액인건비한도액 예산반영절감률 : {('09년도 해당 건비한도액) - ('09년도 인력운영비 예산편성액)/' 단체 총액인건비한도액] × 100 ※ 인력운영비: 총액인건비 19개 항목 전액 ※ 인력운영비 예산편성액 중 고용확대 예산액(조직기원, 실무수습, 무기계약근로자 퇴직비용)은 제외 ③-2 기본정비 예산절감률 : ('08년도 기본정비 예산편/경비 예산편성액) × 100 * 기본정비는 사업예산 통계목인 사무관리비, 공동월액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액 ④ 정책사업 예산절감률 : 계속사업비 예산절감률(50%) ** 정책사업 예산절감률은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해당사 ** 정책사업 예산절감률은 자체사업 대상이며, 국고보조계보조금(511-02), 중앙기금(511-03) 지원사업은 제외 ()-1 계속사업비 예산절감률은 ('09년도 예산편성상 예사업비 절감액 총액/ '09년도 계획된 예산절감 총액/ '09년도 예원편성상 예사업비 절감액 총액/ '09년도 계획된 예산절감 총액/ '20년도 예산편성상 해당 계속사업비 절감액 총액/ '20년도 예산편성상 해당 계속사업비 절감액 총액: 사전에 사업・시설・행사 등 통폐합으로 인한 사전에 사업・시설 · 행사 등 통폐합으로 인한 사건에 시원 · 이9년도 예산점감의 범위에 해당된 절감 * '109년도 계획된 해당 계속사업비 종액: '109년도 예산점감생하당 계속사업비 최상절감실 보급에서 제시된 예산절감의 범위에 해당된 절감 * '109년도 계획된 해당 계속사업비 기9년도 예산편성상 에서 입원감액총액/'109년도 예산절감 해당 해당 신규산업비 절감액 총액: '109년도 예산편성상 신규사업비 절감액 총액: '109년도 예산편성상 신규사업비 절감액 총액: '109년도 예산편성상 신규사업비 절감액, 자체설계 · 감리 등 학사정에 예산원가산정방식 적용에 의한 사업비 통합시행에 의한 사업비 절감액, 자체설계 · 감리 등 사업비 절감액 등 예산절감 길라잡이('08.9 행안부 보산절감의 범위에 해당된 절감 합계액으로 산정 * '109년도 해당 신규사업비 총액: '109년도 새로이 신규/하면서 통상적인 방법 혹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당전된 해당 신규사업비 총액: '109년도 새로이 신규/하면서 통상적인 방법 혹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당전된 해당 신규사업비 총액: '109년도 새로이 신규/하면서 통상적인 방법 혹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당전된 해당 신규사업비 함계액으로 산정	나 지하는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에당 한 도 국 비 으 가 여 선 사이 가 한 도 국 비 로 균 계비 편공사에 한정영획 규 10중편립 의된 편 성기업이 안 경영 후 다 100기성 및 한 예 전에 시 단추의부 된되 사 00기성 및 한 예 전에 함 형 후 이 시 단추의부 된 되 사 00기성 및 한 예 성

- © 재무활동 예산절감률 : ('09년도 예산편성상 재무활동 절감액/ 계획된 '09년도 재무활동 총액) × 100
 - * 재무활동 예산절감액은 지방채조기상환 및 저리차환 이자절감 등 예산절감 길라잡이('08.9 행안부 보급)에서 제시된 예산절감의 범위에 해당된 절감 합계액으로 산정
 - * 예컨대, '09년도 예산편성상 지방채조기상환 및 저리차환이자 절감액 총액: '09년도 예산편성시 '08년도에 조기에 지방채를 상환하거나 저리차환으로 인하여 '09년도에 이자부담이 줄어든 해당 지방채의 이자부담 감소 합계액으로 산정
 - * 지방채이자부담의 경우 계획된 해당 지방채 '09년도 이자부담액 총액: '08년도에 조기에 지방채상환이나 저리차환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 기존 지방채상환계획에 의해 계획된 '09년도 해당 지방채이자부담 합계 액으로 산정
- @ 예산편성상 절감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실적(정성평가)
 - : 일하는 방식 등에 관한 예산편성상 절감 우수사례 건수 및 개선내용 이 실제 행정과정에 적용된 건수
- 산식 설명
- ⑦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률
 - 총액인건비한도액 예산반영절감률은 자치단체별 총액인건비 한도액을 기준으로 실제 인력운영비 예산편성액을 대비함으로써 인력운영비 절감노력을 파악하는 지표로, 총액인건비한도액 예산반영절감률이 높을수록 인력운영비 절감노력 우수단체로 평가
 - 기본경비 예산절감률은 인력운영비와는 별도로 자치단체의 경상적 경비 인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절감노력을 파악하는 지표로, 지표 값이 높을수록 경상비 절감노력 우수단체로 평가
- ⑤ 정책사업 예산절감률
 - 정책사업비(계속사업비, 신규사업비)는 자치단체별로 노력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이의 예산절감 노력을 판단하는 지 표로, 정책사업비 예산절감률이 높을수록 정책사업 예산절감 노력 우수 단체로 평가
 - ※정책사업 예산절감률은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해당사업을 대상으로 함 ※정책사업 예산절감률은 자체사업 대상이며, 국고보조금(511-01), 균툭회 계보조금(511-02), 중앙기금(511-03) 지원사업은 제외
- 때 재무활동 예산절감률
 - 지방채조기상환 및 저리차환 등 재무활동 노력의 결과로 인해 익년도 예 산편성상 이자부담 감소 등에 의한 예산절감 노력을 파악하는 지표로, 재무활동 예산반영절감률이 높을수록 절감노력 우수단체로 평가
- ② 예산편성상 절감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실적
 - 우수사례 실적은 투자사업평가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결과에 의한 예산반영, 예산편성전 사전 유관기관간 업무협조, 재정수요 및 수혜자 재산정 결과에 의한 예산반영, 민간위탁 및 민자유치에 의한 예산절감, 예산편성시 외부기관 지적사항 반영, 참여예산제도 실천 등 합리적 예산편성등을 통해 예산편성상 절감한 사례 건수
 - 제도개선 실적은 예산편성상 절감과 관련하여 일하는 방식 등의 개선 내용이 실제 행정과정에 적용된 건수를 말함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08. 12. 31

측 정 방 법

⑦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률

⑦-1 총액인건비한도액 예산반영절감률 (단위: 백만원)

			'09년5	도 인력운영비	예산편성액((A)		
7 H	계	이력		고용	·확대 예산	액	'09년도 해당 자치단체	{(B-A)/
구분	(A=a-b)	(A=a-b) (관형비 (a)	소계 (b)	조직개편에 의한 초과현원	실무수습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비용	총액인건비 한도액(B)	B}×100
00시도								

⑦-2 기본경비예산절감률

(단위: 백만원)

구분	′08년도 기본경비 예산편성액(A)	'09년도 기본경비 예산편성액(B)	(A/B) × 100
00시도			

자 료 제 출 서 식

⑤ 정책사업 예산절감률

나-1 계속사업비 예산절감률

(단위: 백만원)

구분	'09년도 예산편성상 예산절감 해당 계속사업비(자체사업) 절감액 총액(A)	'09년도 계획된 예산절감 해당 계속사업비(자체사업) 총액(B)	(A/B) × 100
00시도			

①-2 신규사업비 예산절감률

(단위: 백만원)

구분	'09년도 예산편성상 예산절감 해당 신규사업비(자체사업) 절감액 총액(A)	'09년도 계획된 예산절감 해당 신규사업비(자체사업) 총액(B)	(A/B) × 100
00시도			

때 재무활동 예산절감률

(단위: 백만원)

구 분	'09년도 예산편성상 재무활동 절감액(A)	'09년도 계획된 재무활동경비 총액(B)	(A/B) × 100
00시도			

라 예산편성상 절감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실적

랭 -1 절감 우수사례

자 료 제 출 서 식

사 례 명	
사업개요	
주요쟁점	
추진실적(내용)	
평가 및 시사점	
언론보도, 사진 등 참고자료	

관 -2 제도개선 실적

제도개선명	
사업개요	
주요쟁점	
추진실적(내용)	
평가 및 시사점	
언론보도, 사진 등 참고자료	

②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률 , 09년도 예산서 인력운영비 사본 및 '09년도 해당 자치단체 총액인건비한도 액 시달 자료 사본 1부 및 '08년도 최종집행액 자료 및 '09년도 예산서 기본 경비 사본 ④ 정책사업 예산절감률 ´;;; 계속사업비 예산절감률 (단위: 백만원) '09년도 예산편성상 예산절감 해당 계속사업비 (자체사업) 절감액 총액(A) '09년도 계획된 예산절감 해당 지표값 구분 계속사업비 (A/B) 행사 등 통 으로 인한 으로 인한 상 개선에 개선에 의한 폐합으로 시업 보기 절사업비 절의한 사업시도비보조사 (자체사업) 총액 기타 × 100 스 스 사업 가 다 감액 (B) 감액 비 절감액 업비 절감액 비절감액 (시도) 총액(A) 총액(B) 소계 소계 00사업 00사업 00사업 00사업 계속사업중 '09년도 예산편성시 각종 절감노력에 의해 절감된 해당 사업비 예산편성 자료 사본 및 '09년도 예산편성시 절감된 계속사업비중 '08년도말 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서 '09년도에 계획된 사업비 자료 사본 1부 U-2 신규사업비 예산절감률 (단위: 백만원) '09년도 예산편성상 예산절감 해당 신규사업비(자체사업) 절감액 총액(A) '09년도 예산절감 해당 신규사업비 예산원가산정방식 공동건립 및 통 자체 설계·감리 적용에 의한 사업 합시행에 의한 및 내부심사에 의 비절감액 사업비 절감액 한 사업비 절감액 (A/B) (자체사업) × 100 기타 증 빙 자 료 ·총액(B) 총액(A) 총액(B) 소계 소계 00사업 00사업 00사업 00사업 신규사업중 '09년도 예산편성시 각종 절감노력에 의해 절감된 해당 사업비예산편성 자료사본 및 '09년도 새로이 신규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면서 통상적인 방법 혹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당초 계획에 의해 산정된 해당 각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비 자료 사본 印 재무활동 예산절감률 (단위: 백만원) '09년도 계획된 재무활동경비 '09년도 예산편성상 재무활동 (A/B) 절감액(A) 총액(B) 구 분 × 100 내부거래 내부거래 보전재원 보전재원 총액(A) 총액(B) 소계 소계 00 - '09년 예산편성상 재무활동(내부거래, 보전재원) 절감액 및 계획된 재무활동 자료사본 - 예컨대, '09년도 예산편성시 지방채조기상환 및 저리차환 노력에 의해 이자부 단절감 지방채자료 사본 및 기존 지방채상환계획에 의해 '09년도 해당 지방 제 이자부담 자료 사본 1부 의 예산편성상 절감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실적 의 1 우수사례 선정관련 심의서, 언론보도 자료 등 사본 의 제도개선 실적관련 결재 및 회의자료 사본 통자 ○ 세입세출결산서, 사업예산서 및 사업결산서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사무관 김성수(2100-4113, e-mail : ss0227@mopas.go.kr)

(2) 세출절감

평 가 시 책	9-6 지방예산 절감·재투자 실적 평가		
평 기 지 표	9-6-2 세출절감	가중치	
전 전 학 항 법	○ 산식 ② 행정운영경비 절감률 : {(당초예산 행정운영경비 - 행정, 행액) /당초예산 행정운영경비} × 100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의 합계액 ④ 정책사업 절감률 : {(예산절감 해당 정책사업비(자체사업 예산절감 해당 정책사업비(자체사업) 최종집행액)/정책/의 전체 당초예산액} × 100 ※정책사업 예산절감률은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해당사업을 ※정책사업 예산절감률은 자체사업 대상이며, 국고보조금계보조금(511-02), 중앙기금(511-03) 지원사업은 제외 ⑤ 재무활동 절감률 : {(당초예산 재무활동비 - 재무활동비 초예산 재무활동비) × 100 ⑥ 예산집행상 절감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실적(정성평가) : 일하는 방식 등에 관한 예산집행상 절감 우수사례 건이 실제 행정과정에 적용된 건수 ○ 산식 설명 ② 행정운영경비 절감률 - 행정운영경비 절감률 - 행정운영경비 절감률 - 해정운영경비 절감률 - 예산집행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정책사업비 절감에 어느 전체 생절감률 - 예산집행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정책사업비 절감에 어느 전략하였는가를 파악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높을수록 우수※정책사업 예산절감률은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해당사업을 ※정책사업 예산절감률은 이산절감이 이루어진 해당사업을 제보조금(511-02), 중앙기금(511-03) 지원사업은 제외 ⑤ 재무활동 절감률 - 예산집행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제무활동비 절감에 어느 전략하였는가를 파악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높을수록 우수 생정책사업 예산절감률은 자체사업 대상이며, 국고보조금계보조금(511-02), 중앙기금(511-03) 지원사업은 제외 ⑥ 재무활동 절감률 - 예산집행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제무활동비 절감에 어느 전략하였는가를 파악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높을수록 우수 예산집행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제무활동비 절감에 어느 전략하였는가를 파악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높음수록 우수 예산집행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제무활동비 절감에 어느 전략하였는가를 파악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높음수록 우수 예산집행상 절감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실적 - 우수사례 실적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신기술 도입, 정, 수혜대상자 재산정, 유휴시설 재활용, 계약심사강화의 등을 통해 세출예산을 절감하거나 행정서비스의 만족도건수 - 제도개선 실적은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일하는 방식 등의 제 행정과정에 적용된 건수를 말함 ○ 평가대상 : 시・도 평가기준일 : 2008. 12. 31	(a) 당초여 사업비 기 사업비 기 사 기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네산 나 보 다 된 보다

최종집행액(A) 당초예산액(B) 당초예산액(C) ************************************			
(B)	백만원)		
(단위: 백 구분	s}× 100		
구분 여산절감 해당 여산절감 해당 정책사업비 자체사업의 전체 정책사업비(자체사업) 최종집행액(A) 당초예산액(B) 당초예산액(C) (B-A)/			
구분 정책사업비(자체사업) 정책사업비(자체사업) 자체사업의 전체 당초예산액(B) 당초예산액(C) {(B-A)/	만원)		
	C}× 100		
단 재무활동 절감률 (단위: 백명	(단위: 백만원)		
자료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B-A)/B} × 100		
제 출 서 식 00시도			
 라 예산집행상 절감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실적 라 -1 절감 우수사례 사 례 명 			
사업개요 주요쟁점			
추진실적(내용)			
평가 및 시사점 언론보도, 사진 등 참고자료			
☞ -2 제도개선 실적			
제도개선명			
사업개요			
주요쟁점 추지시점에 위			
평가 및 시사점			
언론보도, 사진 등 참고자료			

⑦ 행정운영경비 절감률

- 사업예산 결산서, 당초예산 행정운영경비와 최종집행 내역을 설명하는 자료

⑤ 정책사업 절감률

(단위: 백만원)

		계산절김 (자체사'			_			감 해당 사업비	정책사업비	({(B-A)
구분	유사중복 사업 통 폐합		수혜 대상 자재 산정	유휴 시설 재활 용	계약 방법 개선	기타	(자체 당초여	기십시 사업) 예산액 B)	자체사업의 전체 당초예산액 (C)	/C} × 100
	총액(A)						총액(B)			
소계							소계			
00사업							00사업			
00사업							00사업			

- 사업예산 결산서, 당초 정책사업비와 최종집행 내역을 설명하는 자료

ⓒ 재무활동 절감률

(단위: 백만원)

구 분		활동비 행액(A)		·예산 동비(B)	({(B-A)/B}×
	내부거래	보전재원	내부거래	보전재원	100
	총액(A)		총액(B)		
소계			소계		
00			<u>00</u>		
00			<u>00</u>		

- 사업예산 결산서, 당초 재무활동비와 최종집행 내역을 설명하는 자료
- 라 예산집행상 절감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실적
 - ☞ -1 우수사례 선정관련 심의서, 언론보도 자료 등 사본
 - 라 -2 제도개선 실적관련 결재 및 회의자료 사본

 통계
 ○ 세입세출결산서, 사업예산서 및 사업결산서

 단의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사무관 김성수(2100-4113, e-mail : ss0227@mopas.go.kr)

(3) 재정관리 절감

평 가 시 책	9-6 지방예산 절감ㆍ재투자 실적 평가						
평 가 지 표	9-6-3 재정관리 절감						
측 방 법	 ○ 산식 ② 자체사업 연말지출원인행위 비율(%) : {(연말(11월 -12월)지출원인행위액/세출집행액} × 100 ※ 대상과목: 자체사업(시·도: 국고보조사업, 시·군·구: 국고 및 시·도비보조사업 제외) ① 행사·축제성경비/세출집행액) × 100 ※ 대상과목: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10), 민간행사보조(307-04), 행사관련 시설비(401-07) ※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국제행사(국비지원부분) 및 전국체전(국비 및 지방비 지원부분)은 제외(증빙자료 첨부요) ○ 산식 설명 ② 연말지출원인행위비율 - 연말에 비계획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위한 지표 - 지표값이 낮을수록 우수단체로 평가 ① 행사·축제성경비비율 - 행사·축제성경비 지출수준을 측정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지표임 - 지표값이 낮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높음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2008. 12. 31 						
	⑦ 자체사업	연말지출원인행위비율		الم الحار	(단위:	백만원)	
	구분	11-12월 자체사업 지출원인행위액(A)		집행액 B)	(A/B)	× 100	
	00시도						
자 료	ሁ 행사・축	제성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제 출 서 식		행사	·축제성 경비(A	<u>a)</u>			
1 4	구분 / 계	행사・축제성 경비(통	등계목별)	행사축제성경비	비 제외 세· 집한	핸 (A/ D)	
	(A=a-l	b) (a) 201-03 301-10 307-04	소계 (b)	국제행 시구비	^{'체전} (B		
	00시도						
증 빙 자 료	② 자체사업 연말지출원인행위비율 - 사업예산 결산서, 회계지출 프로그램, 지출원인행위부 ④ 행사·축제성경비비율 - 결산서 부속서류, 행사·축제성 경비 확인 자료 -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국제행사 및 전국체전 자료 확인						
통 계 자 료	O 세입세출경	결산서, 사업예산서 및 사	 업결산서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사무관 김성	수(2100-4113	, e-mail : ss0	227@mopas	s.go.kr)	

(4) 수입증대

평 가 시 책	9-6 지방예산 절감ㆍ재투자 실적 평가								
평 기 표	9-6-4 수입증대	가중치							
장 법	 ○ 산식 ② 수입증대 우수사례 실적(정성평가) :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 관련 우수사례 건수 나 수입증대 제도개선 실적(정성평가) :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 일하는 방식 등의 개선 정에 적용된 건수 ○ 산식 설명 ② 수입증대 우수사례 실적 : 일하는 방식 등의 개선 시 - 지방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및 체납액 징수관리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납부 등 납세방법 개선, 은덕통해 수입을 증대하거나 서비스만족도를 제고한 시 - 세외수입에 대해 유휴장비 민간입대, 공영주차장 입증대, 청사내 주차장, 매점, 식당 임대확대 및 재산 발굴, 공유재산관리 개선 등을 통한 세외수입나 수입증대 제도개선 실적 - 제도개선 실적은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일 선내용이 실제 행정과정에 적용된 건수를 말함 ○ 평가기준일 : 2008. 12. 31 	h례 강화, 인터 탈루 세원 	터넷 납부, 발굴 등을 따른 수 은닉 공유 사례						
자 료 제 출 서 식	 가 수입증대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실적 가 1 수입증대 우수사례 사 례 명 사업개요 주요쟁점 추진실적(내용) 평가 및 시사점 언론보도, 사진 등 참고자료 가 2 제도개선 실적 제도개선명 사업개요 주요쟁점 추진실적(내용) 평가 및 시사점 언론보도, 사진 등 참고자료 								
증 빙 자 료	② 수입증대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실적 ③ -1 우수사례 선정관련 심의서, 언론보도 자료 등 사본 ③ -2 제도개선 실적관련 결재 및 회의자료 사본								
통 계 자 료	○ 세입세출결산서, 사업예산서 및 사업결산서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사무관 김성수(2100-4113, e-mail : s.	s0227@mopa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사무관 김성수(2100-4113, e-mail : ss0227@mopas.go.kr)						

(5) 절감재원 재투자

평 가 시 책	9-6 지방예산 절감ㆍ재투자 실적 평가								
평 가 지 표	9-6-5 절감재원 재투자 가중						· 치		
측 정 법	 ○산식 - 예산집행상 절감재원 재투자율: (재투자액/예산집행상 절감재원) × 100 ○ 산식 설명 - 예산집행상 절감재원을 재투자 대상사업에 투입하여 절감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는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 지표 비율이 높을수록 절감재원의 활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평가됨 ※ 재투자사업은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저탄소·녹색성장, 물가안정, 지역현안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임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2008. 12. 31 								
	○ 절감재원	재투지	-비율				(단의	위 : 백만원)	
자 료 제 출 서 식	구분		자	재투자액(A) 예산집행상 절감재원(B)			지표값(%) (A/B) × 100		
71 7	00시도								
	○ 사업유형	별 절김	재원	재투자 내약	부자.	료	(단	위 : 백만원))
					졑	설감재원 재투>	아 액		
증 빙 자 료	합계 (A+B+C+D)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 일자리창출(정,	저탄소 · 녹색성장(B)	물가안정 (C)	지역현안 사업(D)	
	00시도								
통 계 자 료	세입세출결산서, 사업예산서 및 사업결산서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정정	책과 /	나무관 김성수(2	2100-	4113, e-mail :	ss0227@1	mopas.go.kr	:)

V. 평가지표의 점수부여기준

1. 작성방법(행정안전부)

1 기본 원칙

- O 평가점수별(등급별)로 점수배정 기준을 마련, 통일성 유지
- 평가점수별로 최소점(점수별 40%)을 부여하여 상대적 점수격차 방지 ※ 최소점(40%)은 극히 미흡하거나 사실상 추진이 없는 경우
- O 평가대상 시책에 포함된 기본적 추진사항 외에 자치단체의 노력도, 지역특성 등을 평가하여 지표별 가점부여 고려
 - 가점부여 여부 및 기준은 부처 업무담당자가 제시 ※ 자치단체 특수시책, 관련 증빙자료 등
 - 세부지표별로 배정된 가중치의 5% 부여
- O 해당부처에서 제시한 점수부여 기준을 최대한 존중하되, 점수배정 기본 기준에 불부합시 합리적으로 협의 조정

2 평가 방법

- O 평가지표별 특성, 실적수준 등을 고려하여 절대 또는 상대 평가방식 선택
 - 시·도별 추진실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할 때에는 절대평가를, 변별력이 없거나(또는 적어서) 강제배분이 필요할 때에는 상대평가 를 적용
 - ※ '07년 합동평가→ 절대평가 55%, 상대평가 45% 정도

③ 점수배정 기준(안)

O 평가점수별 점수배정 기준

점수별(등급별)	S	A	В	С	D	최소 부여
배정비율(%)	100	85	70	55	40	
5점 만점(4등급)	5	4	3		2	
10점 만점(5등급)	10	8	6	5	4	
15점 만점(5등급)	15	13	11	9	6	
20점 만점(5등급)	20	17	14	11	8	
25점 만점(5등급)	25	21	17	13	10	
30점 만점(5등급)	30	26	21	17	12	40%
40점 만점(5등급)	40	34	28	22	16	40%
50점 만점(5등급)	50	43	35	28	20	
60점 만점(5등급)	60	51	42	33	24	
70점 만점(5등급)	70	59	49	38	28	
80점 만점(5등급)	80	68	56	44	32	
90점 만점(5등급)	90	76	63	49	36	
100점 만점(5등급)	100	85	70	55	40	

- ※ 정성평가도 동일한 기준 적용
 - 3등급(미흡 또는 미제출, 보통, 우수)⇒ S, B, D
 - 4등급(미흡, 보통, 양호, 우수)⇒ S, A, B, D
- O 평가등급별 점수배정 기준
- ① 2등급⇒ S, D
- ② 3등급⇒ S, B, D
- ③ 4등급⇒ S, A, B, D
- ④ 5등급⇒ S, A, B, C, D

④ 작성 예시

O 절대 평가

시책명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점수부여기준	착안 사항
가정 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 (500)*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실적 (100)	∘ 보호시설 운영 실적률 (100점)	◆ 60%미만 : 40점 ◆ 60~69% : 55점 ◆ 70~79% : 70점 ◆ 80~89% : 85점 ◆ 90%이상 : 100점	
환경관리 일반 (400)	친환경상품 그레비 0	∘ 친환경상품구매율 (80점)	◆ 50% 미만 : 32점 ◆ 50% 이상~ 65%미만 : 44점 ◆ 65%이상~80%미만 : 56점 ◆ 80%이상~90%미만 : 68점 ◆ 90%이상 : 80점	
	구매비율 (100)	∘ 친환경상품 구매 증가율(20점)	◆ 10% 미만 : 8점 ◆ 10% 이상~ 40%미만 : 11점 ◆ 40%이상~70%미만 : 14점 ◆ 70%이상~100%미만 : 17점 ◆ 100%이상 : 20점	

* 총점 500점은 평가지표가 5개(평가지표별 각 100점)란 의미이며, 그 중 하나만 예시한 것임

○ 상대 평가

시책명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점수부여기준	기타의견
국민임대주 택건설지원 (400)	자치단체 국민임대주택 건설 실적 (100)	 지자체 국민임대주 택건설 실적률 (50점) 지자체 국민임대 주택 증감율 (50점) 	◆ 최하위(시2, 도2) : 20점 ◆ 차하위(시2, 도3) : 35점 ◆ 차상위(시2, 도3) : 43점 ◆ 최상위(시1, 도1) : 50점 ◆ 최하위(시2, 도2) : 20점 ◆ 차하위(시2, 도3) : 35점 ◆ 차상위(시2, 도3) : 43점 ◆ 최상위(시1, 도1) : 50점	※ 국민임대주택의 범위확인 ※ 동률인 경우 준공세대가 많은 시도우선 ※ 동률인 경우 준공세대가 많은 시도 우선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화 (500)	에너지 소비 총량제 실적 (100)	에너지소비 총량제 실적률 (100점)	◆ 하위(시2, 도3) : 40점◆ 중간(시3, 도3) : 70점◆ 상위(시2, 도3) : 100점	※ 청사내 신·재생에너지 이용량을 총에너지사용량에서제외

5 제출 서식

(①)평가 지표별 점수부여기준

②시책	③평가지표 ④세부 평가지표 점수부여 기준 및			ㅏ항	비
명	08/1/1 <u>#</u>	생세구 생기지표	⑤점수부여 기준	⑥착안사항	고
	자발적 협약 (VA)추진실적 (100)	자발적협약(VA) 사업장 협약 실적 (100)	◆ 0% 미만 : 40점 ◆ 0% 이상~2% 미만 : 70점 ◆ 2% 이상 : 100점 ※ 협약업체수를 확인하여 인정여부 판단	※협약취소 및 해지된 업체는 유효협약 업체에 서 제외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호우회	절약 및 이용 기용 기무에 기계 전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 증 취득 실적 (50)	◆ 0%: 20점 ◆ 0%초과~전체평균 이하: 35점 ◆ 전체평균 초과: 50점 ※ 실적을 확인하여 인정여부 판단		
直音引 (200)	약의 효율적 추진실적 (100)	건축허가된 건물의 에너 지 절약계획서 EPI 가중 평균점수 (50)	 최하위(시2, 도2): 20점 차하위(시2, 도3): 35점 차상위(시2, 도3): 43점 최상위(시1, 도1): 50점 EPI(에너지성능지표)를 확인하여 인정여부 판단 		

※ 평가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작성(세부 평가지표의 합은 100점 이어야 함)

<작성 요령>

- ①「'07년 합동평가」또는「'08년 통합평가」기재
- ②, ③, ④는 평가지표 작성요령과 동일. 단 ④항목에 정성평가 여부 기재
- ⑤ 점수부여기준 : 해당 지표에 적합한 기준을 개발하되, 기본원칙 및 평가등급별 점수배정 기준에 따라 작성
- ⑥ 착안사항: 지표작성 시 유의사항 등 기재

2. 평가지표별 점수부여기준(안)

□ 행정안전부의 평가지표에 대한 점수부여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예산 절감·재투자 실적평가에 대한 평가지표별 점수부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함(<표 11> 참조)

<표 11> 평가지표별 점수부여기준(안)

시책명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점수부여 기준	착안사항	
	행정운영	행정운영 정비 절감률 (45) 기본경비 예산반영 절감률(15) 기본경비 예산반영 절감률(15) - 전체평: - 전체형: - 전체형: - 전체형: - 전체형: - 전체형:	한도액 예산반영	- 전체평균 이하 4%P 이상: 12점 - 전체평균 이하 2%P-4%P: 17점 - 전체평균 - 이하 2%P: 21점 - 전체평균 - 초과2%P: 26점 - 전체평균 초과 2%P 이상: 30점 ※ 참고: 07년도 결산대비 08년도 당초예산 예산편성 실적 전체평균 8.22% 증가를 고려하여 매년 전체 평 균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전체평균 이하 12%P 이상: 6점 - 전체평균 이하 8%P-4%P: 9점 - 전체평균 - 이하 4%P: 11점 - 전체평균 - 초과4%P: 13점 - 전체평균 초과 8%P 이상: 15점 ※ 참고: 07년도 결산대비 08년도 당초예산 예산편성 실적 전체평균 14% 증가를 고려하여 매년 전체 평균 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고려하여 구분 하여 절감률 등 급구분 필요		
지방				- 전체평균 이하 12%P 이상: 4점 - 전체평균 이하 8%P-4%P: 5점	-계속사업비 절	
예산 절감· 재투자 실적 (500점)	편성상 절감			- 전체평균 - 이하 4%P: 6점 - 전체평균 - 초과4%P: 8점 - 전체평균 초과 8%P 이상: 10점 ** 참고: 정책사업비 전체 06년도 결산대비 07년도 당 초예산 예산편성실적 전체평균 3.34% 증가를 고려하 여 매년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재무활동 절감률(10) 예산편성상 절감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실적(25)		- 전체평균 이하 4%P 이상: 4점 - 전체평균 이하 2%P-4%P: 5점 - 전체평균 - 이하 2%P: 6점 - 전체평균 - 초과2%P: 8점 - 전체평균 초과 2%P 이상: 10점 ** 참고: 다른 세부지표와 마찬가지로 매년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다만, 07년도 결산대비 08년도 당초예산 예산편성 실적 전체평균값이 없어 평균에 대한 편차를 고려하여등급비율을 재검토	예산편성상 에 서는 다른 세부 평가지표에 비 해 상대적으로 재무활동 절감 여지가 적음을 고려		
			- 최하위(시2, 도2): 10점 - 차하위(시2, 도3): 15점 - 차상위(시2, 도3): 20점 - 최상위(시1, 도1): 25점 ※ 참고: 우수사례 건수 및 금액을 확인하여 인정여부판단	해당 시도의 순 위를 기준으로 상대평가		

시책명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행정운영경비절감률 (40)	- 2% 미만 : 8점 - 2% 이상~3% 미만 : 16점 - 3% 이상~4% 미만 : 24점 - 4% 이상~5% 미만 : 34점 - 5% 이상 : 40점	- 본 지표는 값이 높을 수록 우수한 실적으로 평가되는 지표임 - '07년 행정운영비 당초예산과 '07년 결산을 산식에 의해 산출한 평균값이 2.02%임 - 이를 고려하여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세출절감	정책사업 절감률 (40)	- 3% 미만 : 8점 - 3% 이상~5%미만 : 16점 - 5% 이상~6%미만 : 24점 - 6% 이상~10%미만: 34저 - 10% 이상 : 40점	- 본 지표는 값이 높을 수록 우수한 실적으로 평가되는 지표임 - '07년 정책사업비 당초예산과 '07년 결산을 산식에 의해 산출한 평균값이 7.17%임 - 이를 고려하여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100점)	재무활동 절감률 (10)	10% 미만 : 2점 10%이상~-5% 미만 : 4점 5%이상~1% 미만 : 6점 - 1%이상~3% 미만 : 8점 - 3% 이상 : 10점	- 본 지표는 값이 높을 수록 우수한 실적으로 평가되는 지표임 - '07년 재무활동 당초예산과 '07년 결산을 산식에의해 산출한 평균값이 -10.77%임 - 이를 고려하여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지방 예산 절감 · 재투자		예산편성상 절감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실적 (10)	- 최하위(시2, 도2): 4점 - 차하위(시2, 도3): 6점 - 차상위(시2, 도3): 8점 - 최상위(시1, 도1): 10점 ※ 참고: 우수사례 건수 및 금액을 확인하여 인정여부 판단	해당 시도의 순위를 기준으로 상대평가
실적 (500점)	재정관리 절감	자체사업 연말지출원인행위비율 (50점)	- 0.90% 이상 : 20점 - 0.70%이상 ~ 0.90%미만 : 28점 - 0.50%이상 ~ 0.70%미만 : 36점 - 0.30%이상 ~ 0.50%미만 : 43점 - 0.30% 미만 : 50점	지방재정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기준 설정
	설심 (100점)	행사·축제성 경비비율 (50점)	- 0.40% 이상 : 20점 - 0.30%이상 ~ 0.40%미만 : 28점 - 0.20%이상 ~ 0.30%미만 : 36점 - 0.10%이상 ~ 0.20%미만 : 43점 - 0.10% 미만 : 50점	지방재정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기준 설정
수입증대 (100점)	수입증대 (100점)	수입증대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실적 (100점)	- 하위(시2, 도3) : 40점 - 중간(시3, 도3) : 70점 - 상위(시2, 도3) : 100점	해당 시·도의 순위를 기준으로 상대평가
	절감재원 재투자 (100점)	예산집행상 절감재원 재투자율 (100점)	- 70% 미만 : 40점 - 70%이상 ~ 80%미만 : 55점 - 80%이상 ~ 90%미만 : 70점 - 90%이상 ~ 100%미만 : 85점 - 100% 이상 : 100점	70%~100% 사이에 5등급 설정, 점수부여

- 주 : 예산편성상 절감과 세출절감 평가지표의 정책사업 절감률은 자체사업 대상(보조사업은 제외)임
- ※ 세출절감 중 재무활동의 경우 '07년도 전국 평균값이 마이너스(-)이고 플러스(+)인 단체는 3곳 에 불과하며, 편차가 매우 심함. 따라서 점수부여가 매우 곤란함
- ※ 또한 예산절감을 평가함에 있어 산식값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점수를 부여할지 여부는 고민할 필요가 있음. 다만 여기에서는 전국 평균값을 기준으로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일정 점수를 부여 하고 있음